

	학생지도상담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5		
		제정일	2013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속기관인 학생지도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직무범위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생 집단지도활동
2.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3.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, 집단상담 등 심리상담 업무
4. 성희롱 및 성폭력 관리 업무
5. 각종 교육에 관한 업무
6. 졸업생 지원에 관한 업무
7. 기타 관련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는 센터장,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의 센터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에는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과 상담사로 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재정) ① 센터 운영경비는 교비예산 등으로 충당한다.

- ② 센터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	학생지도상담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5		
		제정일	2013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